

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
2026. 09. 04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

- 1. 건 명: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 불능 사유	주소
1	신0현	96.08.25.	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결정 통지서	수급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결정	폐 문부재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부대로 951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6. 9. 4. ~ 2026. 9. 18.(15일간)
- 5.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임진욱(Tel. 031-231-48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